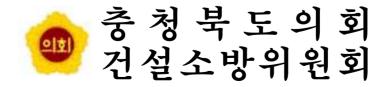
행복한 도민

신뢰받는 의회

제343회 임시회 2015. 10. 21.(수)

심사보고서

○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260 2015. 10. 21.(수) 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임순묵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5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12일

(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: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인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이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으로 전부개정되어 이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'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O 관계법령 변경 「건설기술관리법」→「건설기술 진흥법」(안 제1조)
- O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 삭제(안 제2조)
- 기타 조문 정비 등(안 제2조, 제3조, 제6조,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, 제13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: 김학두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○ 상위법령인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O 상위법령인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제17조제3항은* 지방심의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.
- O 현행 조례에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달리 별도로 규정하고

^{*「}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제17조제3항

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

^{1.} 중앙심의위원회, 다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지방심의위원 회,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

^{2.}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^{3.} 해당 분야의 전문가

있어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,

- O 기타 조문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 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바,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 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없 음"
- 5. 토 론 요 지: "없음"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「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건설기술관리법」"을 "「건설기술 진흥법」"으로, "제19조"를 "제17조"로 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제2항 본문 중 "전임위원"을 "전임자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잔여기 간"을 "남은 기간"으로 한다.

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공사로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
제6조제2호 중 "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"를 "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"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"제19조제2항"을 "제17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"를 "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, 서기는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"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"(위원의 해촉)"을 "(위원의 위촉 해제)"로 하고, 제13조 중 "제23조"를 "제22조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설기 제1조(목적) ----- 「건설기 술관리법 | 제5조 및 같은 법 시 | 행령 제19조에 따라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 략) 같음) ②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, 부위 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.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- 1. 건설 업무와 관련된 도 및 시・군 5급 이상의 공무원
- 2. 건설 관련 단체 임원 및 연 | 구기관의 임원
- 3.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

술 진흥법 | -----

개 정 안

---- 제17조 -----

|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

- ②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 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과 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제3조(위원의 임기) ① (생 략) 제3조(위원의 임기) ① (현행과

-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한다. 다만,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궐 위촉하지아니한다.
- - 1.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9조 제2항제1호에서
- 정한 공사로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 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 - 2. 영 <u>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</u>6호까지 정한 사항
- 제7조(소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 기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영제19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(이하 "분과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운영한다.
 - ② ~ ⑥ (생 략)

| 같음) |
|---|
| ② <u>전임자</u> - |
| |
| <u>古七 71亿</u> |
| 제6조(위원회 심의사항) |
| 1.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공사로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기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|
| 2 <u>제17조제2항제2호부터</u> <u>제5호까지에서</u> 제7조(소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 위원회의 구성 등) ① |
| |
| |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· 전 분과위원회·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 기를 두며, 간사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 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.

② (생 략)

제13조(위원의 해촉) 위원은 속임 저수에 의한 방법 또는 영 제23조의 의 결격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.

| 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| |
| 건설기술심의 업무 ' | 담당 |
| 사무관으로 하고, 서기는 | 건설 |
| 기술심의 업무 담당 직원 | 으로 |
| 한다. | |
| ② (현행과 같음) | |
| 제13조 <u>(위원의 위촉 해제)</u> | |
| | 세22 |
| 조 | |
| | |
| | |

관계 법 령

[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]

제17조(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(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)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. 다만,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.
 - 가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
 - 나.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·인가·승인 등(이하 "허가등"이라 한다)을 한 행정기관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)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
 - 다.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
 - 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이호에서 "영"이라 한다)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·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
 - 나.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
 - 다.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·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
 - 라.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

사항

- 마.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 한 사항
- 바.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
- 사.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 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
- 아.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
- 3.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 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
- 4.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·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·도지사가 심의 에 부치는 사항
-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
 - 1. 중앙심의위원회, 다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 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지방심의위원회,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 위원회 위원
 - 2.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- 3. 해당 분야의 전문가
- ④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·라목·마목·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

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(이하 "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시·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
-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·도 또는 관할 시·군·자치 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.
- ①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의견청취,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, 제14조제1항·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"분과위원회" 및 제9조제7항 중 "설계심의분과위원회"는 "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"로, 제9조제3항, 제14조제1항·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"중앙심의위원회"는 "지방심의위원회"로,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"은 "시·도지사"로, 제15조제3항 중 "제6조제5호나목·라목·마목·사목 및 아목"은 "제17조제2항제2호나목·라목·마목·사목 및 아목"으로 본다.
-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·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국토교 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
-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 례로 정한다.

제22조(위원의 해촉 등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.

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2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
- 3.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
- 4.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(非違事實)이 있는 경우
- 5.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- 6.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
- 7.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- 8.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, 학력 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(前歷)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
- 9.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유리강령을 위반한 경우